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03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한솔

변론 종결2021. 8. 13.

판결 선고2021.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1. 피고 B과 농업회사법인 소외 회사 주식회사 사이에 2016.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13,989,000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3,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2016. 12. 22.경 밀양시 F(2017. 3. 10. 밀양시 F과 밀양시 G토지로 분할되었고, 밀양시 G는 2018. 5. 15. 밀양시 H토지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및 등록전환 전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1,58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3억 400만 원의 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D에게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1,18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I에게 6,000만 원, J, K, L협회, M에게 각 5,000만 원, 소개자인 N에게 4,000만 원, O에게 1,18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2015. 12.초경 소외 회사가 B에게 밀양시 P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피고 C,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및 대금채권 획득

원고는 2015. 4. 15.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밀양시 P 토지 일대의 토목공사와 관련된 보강토블록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보강토블록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 완료한 공사대금이 합계 267,054,000원이고, 이 중 53,0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7,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강토블록 등의 자재 납품 및 보강토블록 시공 공사계약에 따라 보강토블록 등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213,989,000원(= 267,054,000원 - 53,06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이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득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13,989,000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 D에게 가액반환으로서 각 213,98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 1) 원고 스스로도 2016. 12.경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소외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가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5. 2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부당히 염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부당히 염가로 책정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 C, D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자세한 체결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Q조합, 채권최고액 5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R, I의 각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각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5, 6,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2. 22.경 소외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B 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받았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그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5,7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억 5,780만 원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① 2015. 12. 15.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3,600만 원, 근저당권자 Q조합, ② 2016. 6. 21.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R, ③ 2016. 6. 21.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I이다.2)

②

위 근저당권 중 ① 근저당권자 Q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3억 400만 원으로 피고 B이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저당권자 I는 피고 B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중수

판사박이랑

판사박인범

별지

1) 원고는 2020. 11. 1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3항인 "피고 B,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억 1,398, 9,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청구는 취하하였고, 피고들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2) 밀양시 H 토지에는 ② 근저당권자 R의 근저당권과 ③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위 각 근저당권은 1. 기초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필되기 이전인 2016. 12. 23. 각 말소등기되었으므로 밀양시 F에서 분필되어 등록전환된 밀양시 H 토지에는 별도로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